

ス위스의 義務保險制度

宋 河 龍

〈本協會 總務部・代理〉

目 次

- I. 머릿말
- II. 歷史的背景
- III. 法的根據
 - 1. 聯邦法
 - 2. 州法
- IV. 州建物火災保險會社
 - 1. 性格
 - 2. 組織
- V. 保險加入義務와 獨占運營
 - 1. 義務保險의 對象
 - 2. 擔保危險
 - 3. 損害補償
 - 4. 保險目的物의 鑑定

I. 머릿말

급속한 產業의 發展으로 火災로 인한 人命被害와 貢產上の 損失이 大型화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法 第2482號)”를 制定公布하여 特殊建物所有主의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加入을 義務化 하였다.

우리와 비슷하게 建物에 대한 火災保險加入을 義務化하고 있는 外國의 例를 보면 西獨의 경우 11個州中에서 Hamburg, Berlin, Bayern州등 8個州에서 火災保險을 義務化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22個州中에서 19個

州가 義務保險制度를 實施하고 있고 이 밖에도 풀튜칼 네델란드, 브라질 등 南美一部國家에서도 義務保險을 實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義務保險制度를 施行하고 있는 代表의인 國家들 中 하나인 스위스의 義務保險에 대한 實施背景, 取扱機關, 運營方法 등에 대해 概括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II. 歷史的背景

火災保險은 가장 오래된 保險中의 하나다. 그 最初의 形態는 이미 古代 게르만族의 Schutzgilden(保護同盟)의 規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그 構成員들이 災難을 당했을 때 도와 줄 것을 規定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機構들은相互扶助의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15世紀 以後에는 사라져 갔다.

1550년경 獨逸에는 火災保險組合形態의 機構들이 設立되었고 이들은 建物에 火災가 發生하였을 때 現實의 人補償을 目標로 하였으며 주로 現物補償을 하였다. 16世紀末頃에는 이러한 組合의 數가 60을 헤아렸으나 거대한 災害가 發生할 때 效果의 人補償을 할 수가 없다는 事實을 깨닫게 되어 이 時期에 最初로 國家單位의 火災保險制度가 탄생을 보게 되었으며 保險料도 每年 그 損害額을 分擔, 稅金形態로 거두어 들었다. 그러나가 1666年 「倫敦」大火災를 계기로 嘗利를 目的으로 하는 保險會社들이 등장 하였으며 유럽大陸에는 公共性格을 가진 火災保險會社가 出現하였다. 즉 1676년 「합부르크」에 세워진 “General-Feuer-Kasse”가

그것이다. 이러한 公法의 火災保險思想은 北部獨逸에서 南部獨逸로 전파되었고 18世紀中葉에 南部獨逸에 最初로 保險會社들이 設立되었으며 19世紀初 스위스 地方으로 전파되었다.

스위스 最初의 州建物火災保險會社(Gebäudeversicherungsanstalt)는 Aargau州에 設立되었다. 이는 1803년 프랑스의 Frick 계곡이 Aargau州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이 地域은 그 전 오스트리아의支配를 받을當時부터 公共保險制度가 實現되어 있었다. 1805년 Aargau州 참사회는 Fricktal의 公共保險制度를 州全體로 擴張實施하기로 決定하였다. 이후 여러 州에서도 이러한 制度를 導入하여 :

1806년 Thurgau

1807년 Bern, Baselstadt, St. Gallen

1808년 Zürich

1809년 Solothurn, Schaffhausen

1810년 Neuenburg, Luzern

1811년 Glarus, Waadt

1813년 Fribourg, Genf, Zug

順으로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設立되었다. 그러나 最初의 이들 機構들은 損害額에 따라 保險契約者들에게 保險料를 負擔시키는 相互基金形態를 벗어 나지 못하였으며 강한 연대의식과 厚한 損害補償을 함으로써 放火등 어려 不作用이 나타나 保險條件에 대한 法的인 뒷받침이 必要하게 되어立法化 되었고 이후改善策을 마련, 繼續發展하였다.

1833년 Baselland

1841년 Appenzell AR에도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設立되어 모두 17個州로 늘어 났다. 그러나 아직도 天災地變에 對備한 準備金이 없었고, 때문에 1861년 5월 10일~11일 사이에 發生한 Glarus 地方의 大災害에 州의 建物火災保險會社는 补償을 할 수 없었으며 州는 이 損害를 차관을 借어 补償하고 그것을 갚는데 수년이 걸렸다. 이로 因하여 公共保險制度에 反對하는 立場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의 對象이 되었으며 이 결과 Genf州 建物火災保險會社는 1864년 解體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州에서는 公共保險制度를維持시켜 나가며 建物保險法을 改正하여 保險制度의 安定을 도모하고 每年 定해진 保險料를 거두어 支拂準備金을 備蓄하였다. 또한 再保險制度를 導入하여 危險을 分散시킴으로써 다시 信任을 얻기 시작하였다.

1884년 Nidwalden

1907년 Graubünden에도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設立되었다. 1903년 州火災保險聯合을 設立하였으며 1910년에는 再保險團體를 設立하여 私再保險者들과의不便한 去來關係를 清算할 수 있었다.

1979년 Jura州에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設立됨으로써 모두 19個州에서 公共保險制度가 施行되고 있다.

III. 法的根據

1. 聯邦法

1848년 制定된 聯邦憲法에는 保險에 대한 아무런 規程이 없었다. 그러나 以後 私保險企業들이 急增함에 따라 1874년 聯邦憲法에 保險에 關한 規程을 삽입했다. (§ 2③④) 이에 따라 保險監督法이 制定되었으나 州建物火災保險會社는 이 法의 適用을 받지 않도록 明文化되어 있으며 (§ 5①) 1908년에 공포된 保險契約法에도 適用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 2)

2. 州法

州建物火災保險會社는 州의 建物保險法과 이에 따른 執行規程의 適用을 받도록 되어 있다.

IV. 州建物火災保險會社

1. 性格

州建物火災保險會社는 Zürich와 Neuenburg를 除外하고는 公法上의 獨立된法人이며 上記 2個所에서는 州政府의 所屬이다.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破產時에는 Zürich, Neuenburg, Glarus, Nidwallen만이 州政府에서 补償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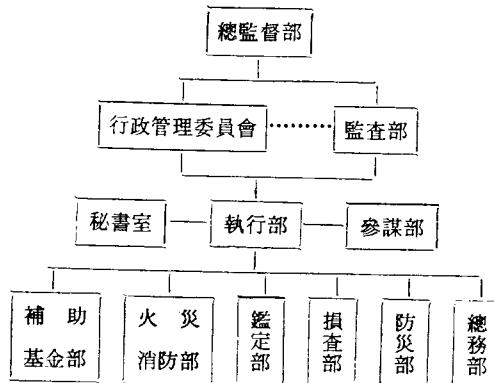
2. 組織

가. 總監督部

州建物火災保險會社의 最高監督機關으로 每年 豈算과 決算을 承認한다. 州에 따라서는 行政管理委員會의 委員選出, 州建物保險會社의 監督選出, 聲請의 決定등을 行하며 州內閣이나 立法部에 屬해 있다.

나. 行政管理委員會

州建物保險會社의 事業遂行의 責任을 진다.



다. 執行部

事業을 遂行하는 部署로 執行部長은 技術的인 問題를 다룰 수 있는 委員으로 構成된 參謀部의 助言을 받으며 州의 다른 官公署를 活用할 수도 있다(例: 토지 등기청, 土木監督局等).

라. 監查部

每會計年度에 州建物火災保險會社의 決算內譯을 調査하여 報告書를 作成 總監督部에 提出한다.

3. 任務

가. 法에서 委任된 保險業務

나. 消防隊에 대한 教育, 監督

다. 州內의 建物에 대한 火災 기타 天災地變으로 부터의豫防對策

라. 火災監視 및 이를 위한 一部費用負擔

마. 被害豫想地域에 대한 被害防止 및 被害減少를 위한豫防對策의 啓蒙, 弘報

V. 保險加入義務와 獨占運營

各州의 州建物火災保險會社는 建物에 대한 火災保險을 獨占하며 保險契約者는 保險加入이 義務化되어 있고 다른 保險者와는 契約을 締結할 수 없다. 만약 州保險會社以外의 保險者와 契約을 締結하면 補償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의무보험대상에서 除外될 경우에는 보다 不利한 條件으로 私保險者와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한편 州建物火災保險會社는 所有主에게 充分한 補償을 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州建物火災保險會社에서 取扱하는 保險은 會社의

利益보다는 社會政策의in 面에서 施行되므로 一般保險會社와는 달리 被保險者보다 優位의 立場에 서지만 契約關係內容은 一般保險會社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雙務契約이다.

1. 義務保險의 對象

가. 建物

1) 加入義務의 開始

州마다 각각 別途의 規程이 있으나 보통 新築時에는 地下層이 完成된 때(Aargau州), 건물의 外型이 完成된 때(BaselLand州), 着工과 同時に(기타州)開始되며 增築, 改築時에는 工事が 끝난 때(Aargau, BaselLand) 또는 着工과 同時に(기타州)開始되고, 建物의 補修, 야간의 增改築時에는 工事が 끝난 때, 建物이 義務保險對象에서 除外된 경우에는 그 除外된 事由가 상실된 때부터 開始가 된다.

2) 保險契約者の 申告, 請約義務

비록 모든 建物은 義務의으로 保險에 加入하여야 하며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獨占을 하고 있다 하여도 保險契約者の 申告와 請約이 있기 前에는 自動으로 保險에 付保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保險契約者の 申告를 하고 州建物保險會社로 부터 加入되었다는 證票를 받기 前에는 여타의 다른 許可를 받을 수가 없다.

3) 保險의 始期와 終期

保險契約者の 申告·請約과 同時に 保險이 開始되며 保險義務의 實質의in 解除事由가 發生하더라도 解止節次를 마칠 때까지는 保險의 効力이 持續된다. 保險이 開始되면 無期限 繼續되며 다음의 경우에만 終結된다.

— 保險에 加入된 建物이 破壞되었을 때

— 保險에 加入된 建物이 保險加入義務에서 解除된 때

4) 保險의 目的의 양도

保險契約者が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경우 保險契約의 讓渡는 土地登記所에서 州建物火災保險會社에 通報되는 시점부터 별도의證明이나 節次없이 새로운 所有主에게 自動으로 讓渡된다.

5) 保險金請求權의 讓渡

여러가지 法律關係上 保險金請求權이 讓渡될 수 있으나 原則적으로 災害가 發生한 後에는 讓渡할 수 있도록 規程되어 있다. 州建物火災保險會社는 다음 사항

에게만 補償을 한다.

——被害當時의 合法的인 所有者

——相續人

——被害當時의 저당권자 또는 保證人

——기타 特別한 權利를 가진자

6) 保險引受의 거절

保險의 目的인 建物의 概念은 各州가 각各 規定하고 있으나 保險技術上 建物概念에 合當하지 못한 경우나 特別한 危險이 있는 경우 그 危險을 除去시키지 않으면 州建物保險會社는 義務保險對象에서 除外시켜서 保險契約引受를 거절할 수 있다. 除外된 建物所有者는 ullen 不利한 條件으로 私保險業者와 契約을 締結할 수 있을 뿐이다.

7) 保險金額(價額)決定

가. 新價保險

大部分의 州에서는 몇몇 例外를 除外하고는 新價로 保險契約을 하고 있다.(Appenzell AR, Baselstadt, Bern, Graubünden, Jura, Luzern, St. Gallen, Solothurn, Thurgau, Waadt, Zug, Zürich, Glarus, Baselland)

一例外

① 時價가 新價의 50~6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

② 建物狀態가 아주 나쁜 경우

③ 建物所有主가 罷災時 再築하지 않을 것을 確認한 경우

④ 建物의 消防法規나 建築法規등의 諸規程을 遵守하지 않고 建築되었을 경우

⑤ 歷史的 建物로서 새로 짓는 것이 無意味한 경우

나. 動產

1) 州法에 의하여 다음 州에서는 動產도 義務의 으로 保險에 加入하도록 規定되어 있다—Aargau, Baselland, Bern, Jura, Freiburg, Glarus, Waadt, Nidwalden.

Nidwalden州와 Waadt州에서는 動產도 州建物火災保險會社에서 獨占하고 있으나 다른 州에서는 一般保險會社와의 競爭下에 引受하고 있다.

2) 保險金額(價額)決定

州에 따라서 新價保險(Waadt)과 時價保險(Nidwalden)으로 引受하고 있다.

다. 土地

1) Appenzell AR, Baselland, Glarus에서는 모든 土地도 義務의 으로 保險에 加入하여야 하며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獨占으로 引受한다. 土地保險의 對象은 土

地, 農作物(추수하기 前까지에 限함) 有實樹, 森林 등 이다.

2) 土地保險의 保險金額은 土地를 再構築하는데 드는 費用으로 통상 定한다.

2. 擔保危險

가. 建物인 경우

1) 基本擔保

가) 火災—① 火災 ② 爆發 ③ 유성, 항공기등 비행 물체의 추락 및 음속돌파시의 굉음에 의한 손해.

나) 自然災害; ① 폭풍 ② 홍수, 범람 ③ 우박 ④ 산사태, 낙석, 놀사태 등

2) 特약담보

지진, 소요테러에 의한 손해등 기타

나. 動產인 경우: 建物의 경우와 同一

다. 土地인 경우: 주로 自然災害에 의한 損害만 擔保 한다.

3. 損害補償

一般的으로 節次등은 우리나라와 비슷 하나 스위스의 경우 건물罹災時 再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保險金을 支給하지 않고 再築時(州마다 다르나 罷災後 1~4年以内에 再築이 이루어 져야 함)에는 工事進度에 따라 一部씩 保險金이 支給되는 特異한 點을 갖고 있다.

4. 保險目的物의 鑑定

保險目的物의 鑑定은 州를 몇개의 區域으로 나누어 擔當鑑定員이 實施한다. 鑑定員은 任期가 定해진 多數의 公務員 또는 暫직 공무원으로 構成된다.

가. 鑑定員의 任務

1) 建物과 其他 州建物火災保險會社가 要請한 物件의 保險價值鑑定

2) 建物의 等級과 風險等級의 決定

3) 火災防止를 위한 指導

4) 火災監視

5) 保險目的物의 罷災時 被害鑑定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鑑定員은 그 복잡한 業務 때문에 이에 諸요한 건축에 대한 경통한 지식이 요망되며 따라서 많은 鑑定員은 建築專門家다. 鑑定員의 數는 州에 따라 다르다.

나. 鑑定의 時期

- 1) 新築時는 完工後 入住하였거나 入住準備가 完了
한 때
 - 2) 增築, 改築으로 價值가 커진 때는 完工된 때
 - 3) 所有主나 保險契約者の 要請이 있을 때
 - 4) 州建物火災保險會社의 總監督部나 行政管理委員會의 要請이 있을 때
 - 5) 保險價值가 矛盾하지 못한 때
 - 6) 주기적인 一般鑑定時 또는 檢査 鑑定時
- 다. 保險契約者の 權利·義務

鑑定의 結果는 保險契約者에게 通報된다. 또한 保險契約者は 必要時 자기 負擔으로 鑑定을 要求할 수 있으며 鑑定員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鑑定時에는 本人 또는 委任을 받은 代理人이 參席하며 保險契約者は 鑑定員이 必要로 하는 資料를 提供하여야 할 義務와 鑑定인의 出入을 妨害하여서도 안된다. 鑑定結果에 대해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州에 따라 10日 또는 30일 이내에 異議를 提起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上級鑑定機關에서 再檢討하여야만 한다. *

〈图表〉

스위스 州別義務保險實施現況

| 州名(Kanton) | 實施年度 | 義務保險對象 | 付保取扱機關 |
|--------------|-------|------------|-------------------------|
| Aargau | 1805년 | 建物, 動產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Thurgau | 1806년 | 建物 | ○動產；州建物火災保險會社 또는 一般保險會社 |
| Bern | 1807년 | 建物, 動產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Baselstadt | 1807년 | 建物 | ○動產；州建物火災保險會社 또는 一般保險會社 |
| St. Gallen | 1807년 | 建物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Zürich | 1808년 | 建物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Solothurn | 1809년 | 建物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Schaffhausen | 1809년 | 建物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Neuenburg | 1810년 | 建物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Luzern | 1810년 | 建物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Glarus | 1811년 | 建物, 動產, 土地 | ○動產；州建物火災保險會社 또는 一般保險會社 |
| Waadt | 1811년 | 建物, 動產 | ○土地；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Fribourg | 1813년 | 建物, 動產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Zug | 1813년 | 建物 | ○動產；州建物火災保險會社 또는 一般保險會社 |
| Baselland | 1833년 | 建物, 動產, 土地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Appenzell AR | 1841년 | 建物, 土地 | ○動產；州建物火災保險會社 또는 一般保險會社 |
| Nidwalden | 1884년 | 建物, 動產 | ○土地；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Graubünden | 1907년 | 建物 | ○建物；州建物火災保險會社 |
| Jura | 1979 | 建物, 動產 | ○動產；州建物火災保險會社 또는 一般保險會社 |